

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4(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)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차량 통행의 최고속도 제한
2. 보행자 보호를 위한 차량 운전자의 준수사항
3.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를 위한 통행 차량 운전자의 준수사항
4. 그 밖에 단지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차량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

② 단지내도로를 설치·관리하는 자(이하 “단지내도로설치·관리자”라 한다)는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금속판 등에 적어 단지내도로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5(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·관리기준)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른 자동차·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설치·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.

제3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6(실태점검의 대상 등) ①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

상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(마목은 제외한다) 단지를 말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57조의3제8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설치·관리자로부터 중대한 사고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점검 대상 단지, 점검시기 및 점검내용 등의 점검계획을 단지내도로설치·관리자에게 미리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단지내도로에 대한 실태점검의 항목과 방법은 별표 8과 같다.

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법 제57조의3제6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단지내도로설치·관리자에게 실태점검 결과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7(중대한 사고의 통보) ① 법 제57조의3제8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지내도로설치·관리자는 단지명, 소재지, 사고발생 일시·장소 및 피해내용 등을 구두, 전화(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), 팩스,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등의 방법으로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설치·관리자로부터 중대한 사고를 통보받은 경우, 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·관리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되거나 다시 설치되는 단지내도로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8]

교통안전 실태점검표(제31조의6제4항 관련)

1. 교통안전시설

항목	점검방법
가. 안전표지	표지·표시 설치위치 및 규격의 적정 여부
	잘못 이해되거나 잘못 안내하는 표지·표시가 있는지 여부
	표지 및 표시 노후·훼손 여부
나.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	과속방지턱 설치 장소 및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
	단지 내 속도저감 시설 설치 여부
	놀이터, 상가 등 보행자 다발 구간 속도저감 시설 설치 여부
다. 시선유도시설	시선유도시설(표지병, 시선유도봉) 설치 장소 및 기준 적정 여부
라. 도로반사경	도로반사경 설치 장소 및 기준에 적정 여부
마. 어린이통학버스	단지 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여부
	버스정류장 표지 유무와 운전자들의 인지여부
	통학버스가 후진 없이 진출입 가능 여부
바. 조명	조명시설 설치 장소 적정 여부
	횡단보도, 교차로 등 보행자 통행다발 구간 조명 설치 여부
	조명시설이 작동하는지 여부
사.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	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장소 및 기준 적정 여부
아. 보행자용 방호울타리	방호울타리 설치 장소 및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
자. 교통정온화시설	교통정온화시설 설치 장소 및 기준 적정 여부

2. 일반사항

항목	점검방법
가. 교통사고	아파트 내 교통사고 발생 여부
	교통사고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여부
나. 운전자의 시야확보	곡선 내부에서 시야 확보 적절 여부
	교차로(내 모든 방면)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사전 인지 여부
	수목, 구조물, 주차차량에 의해 시거 장애 여부
다. 보행자 및 자전거	보도 존재 여부(물리적 시설 분리 여부)
	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조치 여부
	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대기 공간 충분 여부
	횡단시설은 적절한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, 운전자에 의하여 인지가 가능한지 여부
	횡단시설의 설치위치의 적정 여부
라. 포 장	포장노면이 평탄 여부
	포장의 균열과 손상이 있는지 여부
마. 차 로	서로 다른 방향의 교통류가 중앙선으로 분리되었는지 여부
	차로 폭이 적절한지 여부
바. 교 차 로	교차로 면적의 적정 여부
사. 지하주차장	지하주차장 곡선 램프구간 및 교차지점의 반사경 설치 여부
	지하주차장 내 교차지점 인지 향상을 위한 교차로 노면표시 등 설치 여부
	지하주차장 내 횡단보도 및 보행자 통로 설치 여부
	지하주차장 주통행로 시거제약구간 주차면 존재 여부

비고 :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는 「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·관리기준」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1조의4(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)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 <u>1. 차량 통행의 최고속도 제한</u> <u>2. 보행자 보호를 위한 차량 운전자의 준수사항</u> <u>3.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를 위한 통행 차량 운전자의 준수사항</u> <u>4. 그 밖에 단지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차량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</u> <u>② 단지내도로를 설치·관리하는 자(이하 “단지내도로설치·관리자”라 한다)는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금속판 등에 적어 단지내도로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31조의5(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·관리기준)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른 자동차·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설치·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31조의6(실태점검 대상 등) ① 법 제</u>

57조의3제4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(마목은 제외한다) 단지를 말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57조의3제8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설치·관리자로부터 중대한 사고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점검 대상 단지, 점검시기 및 점검내용 등의 점검계획을 단지내도로설치·관리자에게 미리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단지내도로에 대한 실태점검의 항목과 방법은 별표 8과 같다.

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법 제57조의3제6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단지내도로설치·관리자에게 실태점검 결과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31조의7(중대한 사고의 통보) ①법 제57조의3제8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지내도로설치·관리자는 단지명, 소재지, 사고발생 일시·장소 및 피해내용 등을 구두, 전

화(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), 팩스,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등의 방법으로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설치·관리자로부터 중대한 사고를 통보받은 경우, 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14